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93
----------	-----

2024. 6. 24.(월)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6월 11일

-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방무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신산업·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확대 및 변경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확대 및 변경(안 제3조)
-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7조)

## 3. 검토보고 요지

###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조례안은 신산업과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 띄어쓰기 등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3조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기존 25명에서 3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을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현행 1인에서 2인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재난안전실장, 과학인재국장, 투자유치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규제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행정부지사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있어 민관 협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조~7조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p>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p> <p>2. ~ 5. (생략)</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lt;신설&gt;</p> <p>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장이 된다.</p>	<p>----- 가져온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 대표하고----- ----- . &lt;단서 삭제&gt;</p> <p>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조(간사) ----- ----- 간사는 규제개혁 ----- -----.</p>	<p>알기 쉽게 표현</p> <p>띄어쓰기</p>
--	--	-----------------------------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의 전문화 경향에 따라 규제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과도한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원 구성이 늘어나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회의 일정 조율 및 의견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규제개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을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규제”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규제”로,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에”를 “위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② 위원장 중 1명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다른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재난안전실장, 경제통상국장, 과학인재국장, 투자유치국장, 보건복지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건설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해당됨”을 “해당함”으로, “가져 온”을 “가져온”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표하며”를 “대표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중 “간사는규제개혁”을 “간사는 규제개혁”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  
건설국장, 바이오식품의약국장,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④ (생략)

제4조(임기)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  
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  
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  
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  
를 가져 온 경우

2. ~ 5. (생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장, 보건복지국장, 바이오식품  
의약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정국장, 환경산림국장, 균형  
건설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  
-----  
-----  
----- 전임위원 임기  
-----.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  
-----  
-----  
-----  
-----.

1. ----- 해당  
함-----  
-----  
----- 가져온 ----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 대표하고-----  
----- <단서 삭제>

<신 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규제개혁 관련 업무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  
-----  
----- 간사는 규제개혁 ----  
-----.

##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 사 유

- 본 조례안은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위원 구성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별도의 예산을 수반하는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 작성자

- 기획관리실 법무혁신담당관 허 정

## 관련법령 발취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재검토키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